# 연구실안전관리지침

제정 2015.10.14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연구소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이 지침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근거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, 장비 등에 적용한다.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- 1. "연구실"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, 장비, 연구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.
- 2. "연구주체의 장"이라 함은 공사의 직제규정에 의거 사장을 뜻한다.
- 3. "연구주관부서장"이라 함은 연구주체의 장을 대신하여 기술연구소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, 직제규정에 의거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을 말한다.
- 4. "연구실책임자"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, 직제규정에 의거 기술연구소장을 말한다.
- 5. "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"라 함은 연구실의 설비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.
- 7. "연구실 안전"이라 함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, 보건,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
- 8. "안전점검"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9.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·평가를 말한다.
- 10. "안전보호구"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,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전장비를 말한다.
- 11. "위험물"이라 함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, 폭발성, 가연성물질, 유기과산화물, 자연발화성 산화제, 반응성 물질 등을 말한다.
- 12. "물질안전보건자료 MSDS(Material Safety Data Sheets)"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, 응급조치요령,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.
- 13. "안전표식"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, 기구, 장비, 장소,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, 기호, 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.

#### 제 2 장 조직과 직무

제4조(조직) 연구주관부서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실책임자)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안전관리
- 2.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
- 3.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

제6조(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)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연구실내 위험물, 유해물 취급 및 관리
- 2. 화학물질(약품)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
- 3.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
- 4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작성 및 보관(단,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)
- 5.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·보수 요구
- 6.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
- 7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연구활동종사자)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.

- 1. 안전교육의 이수
- 2. 작업간 지정된 안전보호구 착용
- 3. 연구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
- 4. 안전 환경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
- 5. 불안전한 상태의 발견 또는 사고나 상해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

#### 제 3 장 안전교육·훈련

- 제8조(교육·훈련)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.
  -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간 및 내용) 연구주관부서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·훈련의 시간, 내용 및 방법은 [별표3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을 따른다.

### 제 4 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

- 제10조(일상점검)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실험 기자재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유지 하도록 한다. ② 일상점검 실시 내용은 [별지 제1호 서식]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른다.
- 제11조(정기점검) ①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이상 유무와 보호 장치의 성능유지여부 등을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.
  - ② 정기점검 실시내용은 [별지 제2호 서식] 연구실 정기안전 점검표에 따른다.
- 제12조(특별안전점검)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책임자가 주관하여 실시한다.
- 제13조(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)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은 일정자격을 갖춘자 또는 외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.
- 제14조(안전수칙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[별표2]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부착하고, 연구활동종사자는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.
  -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특성에 적합한 연구실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부착 할 수 있다.
- 제15조(안전사고 예방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[별표4]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    - 1. 다량의 고열, 저온물체 취급시
    - 2. 유해, 위험물 취급시
    - 3.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실험 수행시
    - 4.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시
    - 5. 기타 연구실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
  -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,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비상시 행동 요령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[별표5]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  - ② 연구실 사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,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장 정밀안전진단

**제17조(정밀안전진단)**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유해·위험물질 및 시설·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기 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.

제18조(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) 정밀안전진단은 일정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.

#### 제 6 장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

제19조(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)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또는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에 따라 [별표5] 비상시 행동요령의 절차를 따른다.

제20조(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)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.

- ② 사고즉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사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.
- ③ 연구실책임자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.
- ④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려울 시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.
- ⑤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.
- 제21조(사고보고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2(사고보고)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한다.
  -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[별지 제3호 서식]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  -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고사항 외에는 EHSQ주관부서(안전품질실)의 사고보고체계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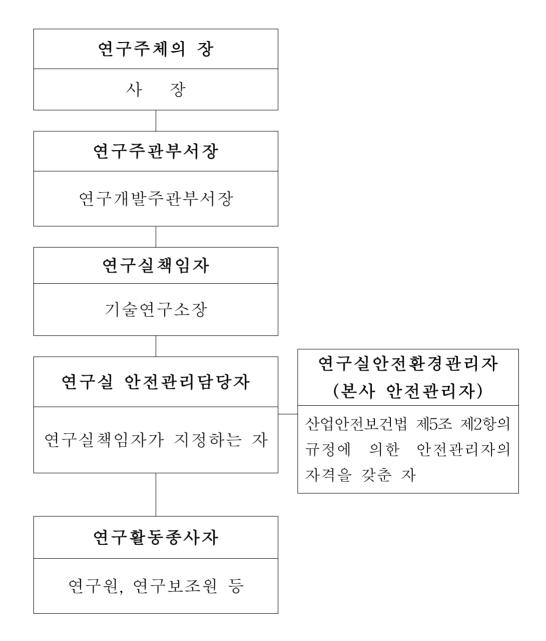
#### 제 7 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

제22조(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) 공사는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.

- 1.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- 2. 연구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- 3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##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



## 연구실 안전수칙

- 1. 각 연구실에서 실험에 임할 때에는 실험시작 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실험복, 보안경(보호면) 및 장갑 등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2. 연구실에서 음식섭취, 식품보존, 흡연 등 불필요한 행동을 금한다.
- 3. 모든 실험장비는 담당자 이외에 취급을 금한다.
- 4. 기계 오작동, 환기불량, 전기기구, 수도, 가스 등 위험요인에 대해 실험시작 전과 퇴실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5.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소화기, 비상구급함의 위치를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.
- 6. 비상대피 시 지장이 없도록 연구실 출입문·비상구·통로 주위에 장애물을 비치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.
- 7. 보호장비는 별도의 보관소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, 관리한다.
- 8.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,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실내에 책임자의 연락처와 응급조치요령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한다.
- 9. 연구실 최종 퇴실 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, 인화성물질 격리, 위험물의 안전한 정리·정돈, 시건장치 등을 확인한다.
- 10. 연구실은 항상 정리·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.

## [별표 3]

##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・훈련의 시간 및 내용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교육시간	교육 내용
1. 정기 교육 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	<ul> <li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(계약직 포함)	8시간 이상	<ul> <li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3. 특별안전 교육·훈련	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## 비고

정기교육·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.

# 위험표시

급성독성	인화성	폭발성, 자기반응성
고압가스	금속(피부) 부식성	산화성
	The state of the s	
수생환경유해성	경고	호흡기과민성
***	( <u>!</u> )	

비상시 행동요령
○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
1. 화재 경보기를 작동한다.
2. 119로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신고한다.
3. 화재를 쉽게 끌 수 있는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끈다
4. 화재가 발생한 출입구의 문을 닫는다.

- 응급환자 발생시
  - 1. 119에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한다.

5.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.

- 2. 필요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.
- 3.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나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보고한다.
- 비상시를 대비한 확인사항
  - 1. 가장 가까운 전화기의 위치
  - 2. 소화기의 위치
  - 3. 화재경보기의 위치
  - 4.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
  - 5. 전원차단 스위치의 위치
- 연구실 책임자

소속 : 성명 : 🏗 :

•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

소속 : 성명 : 🛣 :

- 00 소방서 :
- 00대학교 00 병원 응급센터 :
- 00경찰서 방범순찰대 :

## [별지 제1호 서식]

## 연구실 일상점검표 (월)

부서명: , 연구실명(방번호): , 연구실책임자: (서명), 안전관리담당자: (서명)

점검사항		점 검 결 과											비고							
	심 심 사 왕 일자																			미꼬
_	۸۱	연구실 정리정돈																		
공 통	일 반	출입구 개방 여부																		
	L	실험시 보호장구 착용 여부																		
	,	취급/보관장소 주변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																		
	소 방	소화기 유무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
	0	전기배선 피복 상태 및 파손 여부																		
	1	전기기기, 배선기구 등의 정상가동 여부																		
안	전 [ 기	가스누출 여부																		
전	- 1	가스용기의 고정 여부																		
구	,	산소와 가연성가스(수소/아세틸렌) 분리사용 여부																		
분	가 : 스	통풍·환기장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																		
		화학약품 정리정돈(시약병 개폐 등) 여부																		
	일	시약의 성분 및 종류별 분리보관 여부																		
	반 화	화학물질 보관·사용량의 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
	학	사용용기에 적정한 라벨 부착 여부																		_

#### ※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

- 1. '점검사항'은 각 연구실별로 해당되는 분야에만 점검한다.
- 2. '점검결과'란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 : ○(적정), △(미흡/개선필요), ×(부적정/긴급조치 필요)
- 3. '비고'란에는 안전점검 결과 '×(부적정/긴급조치 필요)'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대책, 조치결과 등을 기재한다.
- 4. 점검시기 :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이상(제4장 10조)

# 연구실 정기안전 점검표

점 검 자	점검일자		
연구실명			
분 야	세부확인사항	점검결과	비고
	- 안면 보호 장비(보안경) 비치 여부		
보호장비	- 호흡 보호장비(방독면, 마스크) 비치 여부		
	- 기타 손 등 보호장비(단열 및 비닐장갑) 비치 여부		
	- 시약관리 상태		
화학약품	- 시약 성상별 보관 여부		
	- 인화성시약 보관 상태 등		
	- 가스 누출 여부		
가 스	- 가스용기 고정 여부		
	- 가연성가스 용기설치장소 적합 여부		
	- 전기 과부하, 접지상태 적정 여부		
전 기	- 전기배선 정리 상태		
	- 전기히타 사용 여부 등		
폐기물	- 실험폐약 보관 및 관리 상태 등		
	- 연구실 정리 상태		
기 타	- 연구실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 부착 여부		
	-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여부		

## ※ 주기 사항

- 1. 점검결과에 양호는 O, 불량은 X로 표시하고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
- 2.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"해당 없음"으로 표기

# 연구실사고 조사표

기관명(주소)									
사고일시	년 월 일 시	사고장소							
인적 피해	○ 피해 연구활동종사자 인적사항 - 성명, 나이, 신분, 부상의 종류 및 정도 기재 - 치료예상기간 및 완치 여부 :								
물적 피해	O 약 천원 - 물적 피해 세부내역 및 추정근거(소방서 등) 기재								
사고원인 및 발생경위	사고 관련 취급물질, 사고 당시 연구활동종사자(또는 피해자)의 연구활동 내용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 - 육하원칙(언제, 누가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의하여 작성하고, 사고현장 사진 별첨								
조치현황 및 향후계획	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(치료 및 복구 등) 기록								
	구 분	연	구실 안전관리 현황 기	  록					
	안전관리규정 작성 작성 여부 및 작성일 기록								
연구실	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가입(보험명, 일자) 또는 미 가입으로 기업								
안전관리 현황	연구실안전교육 실시 교육실시 현황 기입								
	연구실의 안전 및 기관예산에 편성 : 천원 유지관리비 현황 연구비에 계상 : 천원 계 : 천원								
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	상세계획은 별첨								

관계자확인	연구실 책임자	(서명 또는 인)
( 년 월 일)	연구주관부서장	(서명 또는 인)